

2. 업무종료 및 위탁계약 해지일 : 2017. 7. 6.(금) 업무마감 후
3. 폐국일자 : 2017.08.17.(목)
4. 존속기한 : 이 고시는 폐국일(2017.8.17.)까지 유효

●서울지방우정청고시제2017-15호

우체국 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8월 16일

서울지방우정청장

1.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

| 우편취급국명 (총괄국명) | 수탁자 | 설치장소 | 우편날짜도장 |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| 한글 | 영문 | |
| (주)호텔신라 우편취급국 (서울중앙) | (주)호텔 신라 |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9(장충동2가) | 서울신라호텔 | SL.HOTEL SHILLA | |

2. 업무종료 및 위탁계약 해지일 : 2017. 8. 31.(목) 업무마감 후
3. 폐국일자 : 2017. 9. 1.(금)
4. 존속기한 : 이 고시는 폐국일(2017. 9. 1.)까지 유효

●속초해양경찰서고시제2017-2호

유·도선 및 유·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

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와 관련하여 유·도선 및 유·도선장에서의 승선료 등 게시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8월 16일

속초해양경찰서장

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

| 구 분 | 유·도선 | 유·도선장 |
|------|--|---|
| 게시장소 | 출입구 또는 객실 내 |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 |
| 게시사항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승선료,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2. 승선 정원(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) 3.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4. 승객의 준수사항 5. 구명조끼 착용법,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6.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승선료,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2. 승선 정원(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) 3.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4. 승객의 준수사항 |

1. 유·도선과 유·도선 매표소 및 승선장에 상기 게시사항을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의 내용에 맞게 게시하여야 한다.

*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게시사항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.

2. 유·도선 및 유·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. 다만,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가. 게시물의 규격

- 1)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은 가로 400mm, 세로 300mm 이상으로 한다.
- 2)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은 가로 700mm, 세로 500mm 이상으로 한다.
- 3) 매표소 및 승선장의 게시물은 가로 700mm, 세로 500mm 이상으로 한다.
* 공간이 협소하여 게시물 부착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별도사이즈로 정한다.

나. 두께 및 재질 : 아크릴판 또는 스테인리스(철판) 또는 PVC스티커

다. 색상

- (공통) 바탕색은 과란색, 글씨는 흰색 또는 바탕색은 흰색, 글씨는 과란색
(인명구조장비 보관장소) 바탕색은 노란색, 글씨는 빨간색

3. 유·도선 및 유·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승선료,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은 면허 또는 신고된 내용으로 게시한다.

- * 영업구역은 00항 인근 00해리(해점) 등 글로 표현 할 수 있으며, 따로 영업구역을 나타내는 도면을 게시할 수 있다.

나. 승선정원은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게시한다.

다. 승객의 준수사항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3조 및 제19조를 따른다.

라. 구명조끼 착용법은 선박에 비치된 구명조끼와 동일한 사용법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제공한 구명조끼 착용법을 게시한다.

마.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게시한다.

바.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현재 선박 내 비치 현황 등을 포함하여 게시한다.

4. 유·도선 및 유·도선장에서의 게시사항의 게시 장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. 다만, 선박설비기준 및 구명설비기준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가. 유·도선에서의 승선료, 승선정원(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),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, 승객의 준수사항은 출·입구 또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.

나. 유·도선장에서의 승선료, 승선정원(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),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, 승객의 준수사항은 매표소 및 승선장 내 매표 및 승선시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.

다. 구명조끼 착용법,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은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.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.

라.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는 객실 내 승객이 잘 보이는 곳에 1개소 이상 게시한다. 다만 객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각 객실 별로 게시한다.

5.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재검토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1.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3. 종전의 속초해양경비안전서 고시 제2016-08호는 폐지한다.